KOSHA GUIDE M - 161 - 2012

# 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근오 교수
- 제·개정 경과
- 2012년 11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후생노동성 기발 제220호의 2 별첨2 (식품포장기계의 노동재해방지 대책 가이드라 인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,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(포장기계의 덮개등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11 월 29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M - 161 - 2012

## 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식품포장기계(이하"포장기계"라 한다.)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구조기준 및 방호조치 등에 대해 나타내는 것이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식품을 포장하는 기계에 적용된다. 또한, 포장기계는 다종·다양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에 어울리지 않은 포장기계도 있을 수 있지만, 그런 포장기계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안전가드"라 함은 위험부분의 접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격리·보호하는 덮개, 울 등을 말한다.
  - (나) "감응식 안전장치"라 함은 광선식 안전장치 등으로서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감지하여 기계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.
  - (다) "양수조작식 안전장치"라 함은 양손으로 조작하여 기계를 운전하는 것으로서 손가락을 조작스위치에서 이탈하여 위험범위에 넣으려고 할 때 기계가 정지하 는 장치를 말한다.
  - (라) "래핑기(Wrapping machine)"라 함은 낱포장·속포장기계의 일종으로 1개 또는 여러 개의 고체 포장 대상품을 연포장 재료로 싸는 기계로서 접음형식, 돌림형식, 베개타입포장을 하는 것, 통모양으로 싸는 것, 진공밀착식, 수축식, 신축식 등이 있다.

M - 161 - 2012

- (마) "뚜껑 봉함기(Capping machine)"라 함은 병뚜껑 봉함기계의 일종으로 캔, 컵 등의 용기에 뚜껑을 부착하는 기계로서 뚜껑 봉함기에는 유리병, 플라스틱 병 등의 용기에 나사형 뚜껑을 부착하는 나사형 뚜껑 조임기(스쿠루 캐퍼), 파도 모양의 주름을 주변에 설치한 금속제의 원형 캡(왕관)으로 병 입구를 밀봉하는 왕관 타전기 등이 있다.
- (바) "봉함기(Sealing machine)"라 함은 낱포장·속포장 기계의 일종으로 봉합하는 기계의 총칭으로서 열봉함, 봉함, 뚜껑봉함, 테이프봉함, 핫멜트봉함, 결속 등을 하는 기계이다.
- (사) "열 봉함기(Heat sealer)"라 함은 봉함기의 일종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필름, 시트 등을 열에 의해 접합하는 기계로서 다음 과 같은 것이 있다.
  - ① 열판 봉함기(막대 봉함기라고도 한다.)
  - ② 밴드 봉합기(벨트 봉합기라고도 한다.)
- ③ 임펄스 봉함기
- ④ 열풍 봉함기
- ⑤ 초음파 봉함기
- ⑥ 고주파 봉함기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구조상의 기준(공통사항)

## 4.1 기본적인 유의사항

제조자는 포장기계의 설계·제조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.

- (가)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질 것.
- (나) 위험부분은 가능한 한 설계·제조단계에서 제거하도록 할 것.
- (다) 가능한 위험범위에 신체의 일부를 접근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할 것.
- (라) 기계의 동력은 가능한 한 작게 할 것.
- (마) 가동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하고 또한 그 운동범위를 작게 할 것.

## M - 161 - 2012

- (바) 점검·검사, 청소, 세척, 보수 등을 실시하기 쉽도록 할 것.
- (사) 기계는 페일세이프, 풀푸르프 기능을 갖게 할 것.
- (아) 인간공학적인 배려에 의해 안전성확보를 꾀할 것.

#### 4.2 안전가드 등

## 4.2.1 안전가드 등의 설치 기준

- (1) 동력전달부, 속도조절부, 포장기구부 등의 작동부분에서 근로자가 접촉하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안전가드를 설치할 것. 위험의 형태에 따라 감응식 안전장치,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.
- (2) 운전 중에 포장 대상품, 제품 등의 비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안전가드를 설치할 것.

#### 4.2.2 안전 가드의 구조

안전가드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
- (가) 확실한 방호능력을 가질 것.
- (나) 위험부분이 내부에 있는 것이 표식 등에 의해 명시될 것.
- (다) 필요한 강도, 내구성을 가질 것.
- (라) 내부가 보이는 구조로 하는 경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, 파손되어도 파편 등이 비산하기 어려운 재료 등을 사용할 것.
- (마) 접촉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돌기물,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.
- (바) 가능한 한 포장기계의 청소, 점검, 조정 등의 작업에 장해가 되지 않을 것.
- (사) 포장기계의 작동부분 사이에 손가락 등이 끼일 수 있는 틈새가 없을 것.
- (아) 틈새, 선반, 망 등의 개구부는 그곳을 통해 신체가 위험 범위에 도달하지 않는 크기일 것.
- (자)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설치 할 것.
- (차) 착탈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일 것.
- ① 착탈을 쉽게 할 수 있으며, 견고하게 설치할 것.
- ② 제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촌동, 미동운전 등(이하"촌동운전"이라 한다.) 특정한 운전을 제외하고 포장기계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연동되어 있을 것.

M - 161 - 2012

- (카) 개폐식의 것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일 것.
- ① 포장기계의 운전 중에는 열 수 없거나 또는 안전가드를 열 때 즉시 포장기계가 정지하도록 연동되어 있을 것.
- ② 열려있는 경우에는 촌동운전 등 특정 운전을 제외하고는 포장기계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연동되어 있을 것.
- ③ 열려서 포장기계가 정지했을 때는 재기동조작을 하지 않으면 기동하지 않을 것.
- ④ 열려있는 경우 진동 등에 의해 닫히지 않을 것.

## 4.2.3 감응식 안전장치

감응식 안전장치는 근로자의 몸이 위험범위내에 없는 것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질 것.

## 4.2.4 양수조작식 안전장치

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
- (가) 양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고 있는 동안 만 포장기계가 작동할 것.
- (나) 스위치는 위험범위에서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있을 것.
- (다) 2개의 스위치는 300 mm이상 떨어질 것.
- (라) 푸시버튼스위치의 경우는 머리묻힘형 일 것.
- (마) 조작자 이외의 근로자가 위험범위에 근접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응식 안전 장치 등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.

#### 4.3 동력 차단장치

- (1)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떠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스위치, 클러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.
- (2) 동력 차단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접촉, 진동 등에 의해 갑자기 포장기계가 기동할 우려가 없을 것.

## 4.4 비상정지장치

- (1) 포장기계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할 것
- (2) 비상정지장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  - (가)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을 것.
  - (나) 제어회로 등 전원의 차단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회로는 비

M - 161 - 2012

상정지장치가 작동한 경우에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을 것.

- (다)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에 의해 운전이 정지 한 경우에는 재기동조작을 하지 않으면 기계가 가동하지 않을 것.
- (3) 비상정지용스위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  - (가) 비상시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작반 및 조작반 이외의 필요한 곳에서 쉽 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(위험부분 근처에서 근로자가 끼임, 말림 등의 경우에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 등)에 설치할 것.
  - (나) 2이상의 작업위치가 있는 포장기계의 경우는 각각의 작업 위치에 설치할 것.
  - (다) 스위치의 색상은 적색으로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할 것.
  - (라) 푸시버튼스위치의 경우는 돌출형으로 할 것.

#### 4.5 조작 장치 등

- (1) 포장기계는 필요에 따라 촌동(Inching), 미동 등의 수동운전이 가능할 것. 또한 촌 동 운전시에는 작동속도가 저속인 것이 바람직 함.
- (2) 포장기계의 조작 장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  - (가) 인력에 의한 운전 중에는 동력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없을 것.
  - (나) 기동할 때 경보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하는 등 우발적 기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.
  - (다) 여러 개의 조작반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운전중 비상정지장치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조작반 이외의 조작반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연동장치가 되어 있을 것.
  - (라) 기동스위치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할 것.
  - (마) 작동속도를 변경하기위한 스위치, 레버 등은 설정된 위치에 확실하게 유지되는 구조일 것.
  - (바) 포장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푸시버튼스위치는 조작반, 스위치케이스 등에 수 납되어 있고, 해당 조작반, 스위치케이스 등의 표면에서 돌출하지 않는 구조일 것.
  - (사) 풋스위치는 불의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할 것.
  - (아) 포장기계가 비상정지장치, 이상검출장치 등의 작동에 의해 운전을 정지한 때는 그 취지를 표시하는 램프, 경보기 등을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.
  - (자) 잠금장치 등으로 전원을 확실히 차단하는 등 점검, 조정, 수리 등의 작업에 있어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.

M - 161 - 2012

- (차) 레버, 핸들 등으로 조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레버, 핸들 등의 움직임의 방향과 기계의 가동부분의 운동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.
- (카) 조작반의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알기 쉽게 표시할 것.
- ① 전원의 "ON", "OFF"
- ② 유압 또는 공압원의 "ON", "OFF"
- ③ "기동", "정지"
- ④ 운전상태의 종류("자동", "수동"등의 상태)
- ⑤ 비상정지장치의 작동
- (3) 조정용 수동핸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핸들부분에 안전가드를 설치하며, 안전가드와 기 동스위치를 연동시키거나 또는 수동핸들을 제거하면 기동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.

#### 4.6 전기장치

## 4.6.1 내전압변동

전기장치(포장기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전기기기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는 정격전 압의 상하 각 10%이내의 전압변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할 것.

#### 4.6.2 전원의 단일화

- (1) 전기장치는 하나의 전원에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 함.
- (2) 전기장치의 전자기기, 전자클러치 등이 해당 전기장치의 다른 부분과 다른 전압을 필요로 하는 경우, 해당 포장기계에 내장된 변압기, 정류기 등의 변환장치에 의해 필요한 전압을 얻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.

#### 4.6.3 메인스위치

전기장치의 메인스위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
- (가) 점검, 조정, 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장 치를 전원으로부터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.
- (나) 차단 용량은 해당 포장기계의 최대 과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있을 것.

#### 4.6.4 접지

(1) 전기장치를 내장하는 포장기계 및 이와 별도로 설치된 부속장치에는 각각 접지단 자를 설치.

M - 161 - 2012

(2) 접지단자 중 주접지단자는 전원단자 근처에 설치할 것.

## 4.6.5 감전방지

- (1) 충전부분의 전압은 가능한 한 낮게 할 것.
- (2) 충전부분에서 감전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.

#### 4.6.6 방수

- (1) 습한장소에서 사용되는 포장기계의 조작반 및 제어반은 방적(防滴)구조로 하며, 필 요에 따라 방수구조로 할 것.
- (2) 습한장소에서 사용되는 포장기계의 조작스위치, 타이머 등의 전기부품은 방적구조하며, 필요에 따라 방수구조로 할 것.

## 4.6.7 전동기

- (1) 전동기는 원칙적으로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.
- (2) 습한장소에서 사용되는 전동기는 원칙적으로 전폐형(全閉型)으로 할 것.
- (3) 직류전동기로서 과속도로 될 위험이 있는 것은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할 것.

## 4.6.8 제어

- (1) 접촉기와 계전기는 포장기계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.
- (2)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제어하는 가역접촉기는 전환 시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.
- (3) 전동기를 역상제동으로 정지시키는 제어회로에 있어서는 전동기가 정지 후 역전 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, 전동기가 정지상태에 있을 때 전동기의 축을 손으로 움직 여도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.
- (4) 정전 후 전원이 복구될 때 자동으로 재기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포장기계는 무전압 계전기를 설치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.
- (5) 전압이 변동할 때 오작동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포장기계는 과부족 전압계전기를 설치할 것.
- (6) 제어회로는 포장기계가 잘못 작동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

M - 161 - 2012

하는 것이 바람직 함.

## 4.6.9 전기 계통의 분리

조작반, 제어반 등 전기계통의 수납상자는 유압기기, 공압기기 등 전기관계 이외의 기기를 수납하지 않거나 칸막이 벽 등에 의해 다른 기기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.

## 4.6.10 전자파 노이즈 대책

포장기계의 제어회로에서 전자파 노이즈에 의한 오작동의 우려가 있는 것은 외부의 전자파 노이즈의 침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할 것.

## 4.6.11 정전기 대책

정전기의 대전에 의해 방전불꽃이 발생하는 경우의 폭발, 화재, 전자소자의 손상, 전자기기의 오작동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전기대책을 강구할 것.

## 4.7 공기압장치 및 유압장비

- (1) 포장기계의 공기압장치 및 유압장치(이하 "공기압 장치 등"이라한다)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  - (가) 정전 또는 전기적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.
  - (나) 자동운전 상태에서 비상시 긴급정지를 할 수 있을 것.
  - (다) 공기압 또는 유압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.
  - (라) 공압 또는 유압이 소정압력 이하로 저하되는 것에 의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할 것.
  - (마) 점검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.
  - (바) 배관은 잘못된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과 접속구를 색깔로 구분하는 등의 조 치를 할 것.
  - (사) 방향제어밸브에는 그 작동방향을 표시합니다.
  - (아) 압력계는 회로이름과 사용압력을 표시합니다.
  - (자) 압력 및 유량을 조정하는 기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압력 또는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.
- (2) 공기압장치는 상기(1)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의 정하는 바를 따를 것.

M - 161 - 2012

- (가) 점검, 수리 등의 경우에 구동용 실린더 내의 잔압을 쉽게 개방할 수 있을 것.
- (나) 본체 또는 공기 배출 관에 드레인 배수 밸브를 설치하여야한다.
- (다) 압력방출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.

#### 4.8 기타

## 4.8.1 회전부분 등

- (1) 포장기계의 회전부분의 고정구 등은 머리 묻힘형의 것을 사용하거나 덮개 등을 설치할 것.
- (2) 포장기계의 축, 풀리, 기어, 로터리커터 등의 회전부분 또는 왕복부분 또는 반송벨트, 체인 등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는 안전가드를 설치할 것.

## 4.8.2 고온부

포장기계의 고온부분으로 일반적인 작업에 근로자가 접촉, 접근함으로써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단열구조의 안전가드를 설치할 것.

#### 4.8.3 기계의 외면

근로자가 통상 접촉 또는 접근하는 곳에는 날카로운 돌출부, 날카로운 모서리 등의 위험부분을 설치하지 말 것.

## 4.8.4 기타 구조상의 요구사항

- (1) 포장기계,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 및 제품의 송급 및 취출이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.
- (2) 포장기계는 청소, 세척, 점검, 조정 등이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.
- (3) 칼날을 갖는 포장기계에 있어서는 칼날의 교체 등의 작업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.
- (4) 높이가 1 m이상의 장소에서 점검, 조정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포장기계에 있어서는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.
- (5) (4)의 작업바닥의 끝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 cm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.
- (6) 포장기계에는 해당 기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아이볼트, 후크 등을 설치하고, 운반용 도구를 설치할 수 있는 슬릿, 구멍 등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

M - 161 - 2012

수 바람직 함.

## 4.8.5 표시

포장 기계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할 것.

- (가) 제조자 이름
- (나) 제조년월
- (다) 제조번호
- (라) 형식
- (마) 중량
- (바) 정격전압
- (사) 구동용 전동기의 정격출력

## 5. 구조적 기준 (기구별 사항)

5.1 공급 · 이동 · 배출기구

## 5.1.1 컨베이어

- (1) 포장기계에서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의 공급, 이동, 배출을 하는 컨베이어 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  - (가) 근로자가 말릴 우려가 있는 컨베이어는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 안전 가드의 설치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는 푸셔, 플라이트바(Flight bar) 등의 부품의 이동에 따른 위험을 명시하기위해 해당 부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색칠을 하고,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  - (나)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컨베이어는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  - (다) 조작부분은 원칙적으로 1개소로 할 것.
  - (라) 운반 길이가 긴 컨베이어는 기동, 정지 또는 이상시 컨베이어 주변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. 또한 여러 개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고 필요한 장소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할 것.
  - (마) 운송 중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의 파손, 비산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손의 원인이 되는 이상을 검출하여 기계가 정지

M - 161 - 2012

하는 자동정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.

- (바) 기복장치, 신축장치, 선회장치, 승강장치 등이 있는 컨베이어에는 이들 장치의 작동을 고정하기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.
- (사)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의 하역, 착탈 등을 근로자가 하는 컨베이어에 있어서는 컨베이어의 높이, 폭, 속도 등은 근로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할 것. 또한 근로자가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의 하역, 탈착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것.
- (아) 컨베이어에는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컨베이어의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의 공급을 정지시키는 인터록을 설치하여야한다.
- (2) (1) 외에 컨베이어는 "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-46 호)"를 따를 것

#### 5.1.2 피드 롤러

피드 롤러에는 근로자가 말려들지 않도록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 5.1.3 스타 휠

- (1) 스타 휠은 근로자가 휘말리지 않도록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- (2) 포장 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이 파손하여 비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을 방지하기위한 안전 가드를 설치할 것. 또한, 파손의 원인이 되는 이상을 검출하고 자동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.

#### 5.1.4 턴 테이블

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이 낙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턴테이블에는 안전 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## 5.1.5 간헐 이송기구

간헐 이송기구에서 근로자가 기계의 작동 상태의 오인 등에 인하여 기계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는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## 5.1.6 중력 이송기구

포장대상품 등이 낙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력 이송기구에는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M - 161 - 2012

## 5.1.7 유동물 충전기구

유동물의 충전기구에서 유동물의 누출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는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## 5.1.8 호퍼

호퍼와 컨베이어 사이의 틈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안전 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## 5.1.9 스크류 피더

- (1) 포장대상품등을 보내는 스크류피더에 근로자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가 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- (2) 포장대상품등의 비산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을 방지하는 안전가드를 설치할 것.

#### 5.1.10 비산 방지

공급기구 등으로부터 흘러넘친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출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안전가드를 마련하고, 유출된 포장대상품 등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구조로 할 것.

## 5.1.11 감겨진 포장재료의 공급부

- (1) 감겨진 포장재료를 공급하는 부분의 릴, 플랜지, 홀더 등에는 위험한 돌기부 등이 없을 것.
- (2) 감겨진 포장재료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해당 포장재료를 기계에 장착 할 때 근로 자가 끼일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.

#### 5.2 집적기구(集積機構)

## 5.2.1 중력 집적기구

- (1)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이 낙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력 집적기구는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- (2) (1)의 안전가드는 내부의 포장대상품, 포장 재료, 용기 등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
M - 161 - 2012

## 5.2.2 강제 집적기구

- (1)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이 낙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강제 집적기구는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- (2) (1)의 안전가드는 내부 포장대상품, 포장재료, 용기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- (3) 강제집적기구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하는 부분은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## 5.3 계량·계수·검사기구

계량·계수·검사기구의 호퍼, 슈트 등의 내면은 평활하며 모서리는 둥글게 모따기를 실시하며 먼지의 부착을 방지함과 아울러 청소하기 쉽도록 할 것.

## 5.4 클로징기구

#### 5.4.1 접착기구

- (1) 저온 접착기구는 접착제의 보급 중 및 운전 중 접착제가 흘러넘쳐도 좋도록 받침, 접시, 커버 등을 설치할 것.
- (2) 고온용융 접착기구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  - (가) 용해탱크, 도포롤러 및 분사건은 근로자가 고온의 접착제나 기계의 고온 부분 에 접촉 하는 것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할 것.
  - (나) 용해 탱크는 접착제가 누설 또는 오버플로우 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접착제의 보급 작업 중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.
  - (다) 도포롤러 또는 분사건은 운전 중에 기계가 정지 할 때 도포 또는 분사를 정지 하는 구조로 할 것.

## 5.4.2 용기성형기 및 봉함기(Sealing machine)

용기성형기 및 봉함기의 고온부분은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단열구조의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 5.4.3 뚜껑 봉함기(Capping machine)

(1) 캡 프레스(Cap Press)에는 플라이휠을 부착하지 말 것. 또한 동력을 다른 동력과 같이 사용할 때는 토크제한장치를 통해 전달할 것.

M - 161 - 2012

- (2) 프레스 헤드(Press Head)는 튼튼한 구조의 안전가드를 설치할 것.
- (3) 마개, 크라운 등의 공급슈트와 프레스 헤드사이는 근로자가 끼일 수 없도록 안전 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- (4) 병 등의 용기가 파손된 경우에 그 파편과 유출된 내용물 등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.

## 5.5 라벨부착기구

고온용융접착기구에 의한 라벨부착기구는 다음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
- (가) 근로자가 고온의 접착제나 기계의 고온부분에 접촉 하는 것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단열구조의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- (나) 용해탱크는 접착제가 누설 또는 오버플로우 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접착제의 보급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.
- (다) 도포롤러 또는 분사건은 운전 중에 기계가 정지할 때, 도포 또는 분사를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.

#### 5.6 인쇄기구

열전사 인쇄기구 등의 고온부분은 근로자가 접촉하는 것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단열구조의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 5.7 절단기구

- (1) 로터리커터, 왕복커터, 가위 등의 날 부분은 근로자가 접촉하는 것에 의한 접속부분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- (2) 칼날의 교체, 조정, 청소 등을 할 때에 칼날의 움직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위 하여, 칼날은 확실히 정지하고 고정되는 구조로 할 것.
- (3) 포장재료를 절단하는 열선 또는 열 막대기는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위 해 단열구조의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 5.8 가열·용착기구

#### 5.8.1 전기 가열 장치

- (1) 발열선은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.
- (2) 발열선의 접속부분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
M - 161 - 2012

- (가) 발열선을 서로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부분은 전원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커지지 않도록 할 것.
- (나) 접속부분에는 연결관 등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고 연결부분을 발열선 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할 것.
- (3) 발열선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부분 등에 장착한 금속체의 커버는 접지를 할 것.
- (4) 발열선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부분을 어쩔 수 없이 노출시키는 경우는 절연변압 기를 통해 그 2차측 회로의 전압이 교류는 30 V이하, 직류는 45 V이하로 하고 또한 접지한 경우 대지에 흐르는 전류는 1 mA이하로 할 것.

## 5.8.2 공업용 적외선램프 가열장치

- (1) 적외선램프의 소켓은 열쇠가 없는 것으로 하고 세라믹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 및 절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.
- (2) 적외선 장치의 배선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  - (가)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있는 노출부분이 없을 것.
  - (나) 배선은 지름 1.6 mm이상의 구리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.
  - (다) 유리섬유 등의 내열성 절연피복전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알몸전선을 두께 1 mm이상의 견고한 세라믹 관에 넣고 이를 세라믹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을 갖는 내열성 절연물로 지지할 것.
  - (라) 적외선 장치의 배선과 외부 배선은 연결 단자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단자부의 온도는 40℃ 이하가 되도록 할 것.

#### 5.8.3 고주파 가열장치

- (1) 고주파 가열장치의 전극 또는 가열 코일에 이르기까지의 배선은 근로자가 접촉 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.
- (2) 고주파 가열장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  - (가) 각 부분을 불연성의 상자 등으로 둘러 쌀 것.
  - (나) 근로자가 접촉 또는 근접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노출된 충전부분에는 안전가드를 설치할 것.
  - (다) 전극부분은 불연성물질의 상자 또는 격벽으로 방호할 것.
  - (라) 상자에 문 또는 분리 가능한 패널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것을 열면 전로가 차

M - 161 - 2012

단되는 구조로 할 것.

(3) 고주파 가열장치의 제어용 배전반은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는 구조로 할 것.

## 5.8.4 초음파 용착장치

이동식 초음파 용착장치의 혼 등의 가공부분 등에서 해당 부분의 이동 등에 의해 근로 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것에는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.

## 6. 선정 및 설치

## 6.1 선정

포장기계의 선정에 있어서 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하 도록 노력할 것.

#### 6.2 설치

포장기계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.

## 6.2.1 배치

포장기계의 주위에는 다음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.

- (가) 기계조작 또는 감시를 위해 필요한 공간
- (나) 기계의 청소, 세척, 검사, 조정 등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

## 6.2.2 설치

포장기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.

- (가) 기계중량 및 운전시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 할 것.
- (나) 설치위치의 수평을 확인할 것.
- (다)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.
- (라) 바퀴에 의한 이동식 포장 기계는 바퀴잠금장치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위치를 결정한 후 스터드볼트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바퀴를 바닥에서 띄우는 등으로 바퀴의 구름에 의한 불의의 이동을 방지한다.
- (마) 전도의 우려가 있는 포장기계는 바닥 또는 벽 등에 볼트 등으로 고정할 것.

## 6.2.3 조작반

M - 161 - 2012

조작반을 포장기계 본체와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작업자가 포장기계의 작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.

## 6.2.4 전기 계통 등

- (1) 조작반, 제어반 등 전기계통의 수납상자는 직접 바닥에 두지 말 것. 바닥에 둘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상자바닥과 바닥 사이를 250 mm이상 뗼 것.
- (2) 전기배선, 유압배관 또는 공기압배관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피복 등의 방호를 할 것.
- (3) 포장기계의 접지단자는 확실히 접지할 것.
- (4)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포장기계에는 해당 포장기계가 연결된 전로에 해당 전로 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, 또한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 단장치를 접속할 것.
- (5) 마이크로컴퓨터를 사용하는 포장기계 등에서 전자파 노이즈에 의한 오작동의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할 경우는 그 주변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전자파노이즈의 발생 및 외부로 누설을 저감하는 등 해당 오작동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할 것.

#### 6.2.5 고주파 가열 장치

고주파 가열장치를 설치하는 장소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. 다만, 위험한 충전부분이 둘러싸인 작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6.2.6 작동확인

포장기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포장기계의 작동, 관련 기기와의 연동상황 등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.